2021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기재요청사항 (예사용)

성	명				본 서류외 성산간소화지		발정산간소화자료 ′를 계정)	제출하시	기 바랍	니다.	
190	40	 ※ 중도, 신규 입사자의 간소화자료는 근무 제공 월만 조회하여 다운로드 ※ 연말정산 종합 안내 홈페이지 : https://call.nts.go.kr/call/taxInfo/selectTaxInfo.do?mi=1317 									
체 크 사 항											
2021년 이	직	<u></u>	X I		지 근로소득원 본인이 합산신		증 제출				
2 이상의 급	0 /	Y	"O" 종된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(미제출시 본인이 합산신고)								
세대주 🥥 /			Х								
부녀자		0 /	(X)	기혼여성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미혼여성 (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만 해당)							
한 부모가정 이 / 🔾 배우자 없는 거주자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											
부 양 가 족											
※ 소득요건 : 아래의 소득 이하면 'O' 초과면 'X'로 작성 (2021년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·양도·퇴직소득 100만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)											
성명 주민등록번호		록번호	장애인	관계	소득요건	성명	주민등록번호	장애인	관계	소득요건	
아우기	아우 14 1234 ~		×	부	D						
						,					
가 면 및 공제											
중소기업 취업 감면자				2021년 신규 입사자 중 감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한 경우 감면기간 기재 (시· 나 ~ 나) -> 오늘면 반간으로 놔두기							
월세액 공제		0 /((X)								
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		0 /(A	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첨부 된 신청서에서 요건 확인하시어 서명 후 제출							
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		0 (3								
주 의 사 항											

- 1.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누락
- 2. 소득금액 기준(100만원) 초과 부양가족공제
- 3.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또는 소득공제 중복
- 4.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의 주택마련저축 공제
- 5.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대상 지출액을 국세청 내용과 상이하게 공제 (단, 국세청자료의 내용이 오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내용대로 공제 가능)
- 6. 대략적인 공제 및 감면 요건은 PDF파일 4~6쪽 참고